

# I. 미 국

□ FY2010 : 2009.10 ~ 2010.9

□ 출처 : Fiscal Year 2010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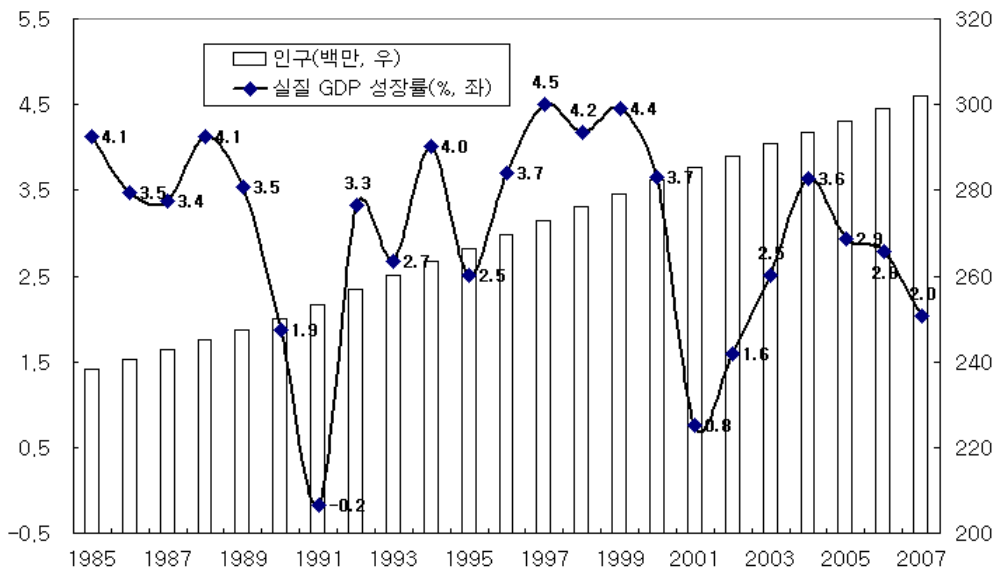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09 to 2019, CBO, 2009.1

□ 환율(2008년 평균) : 1USD = 1102.59원

□ 경제규모(IMF기준) : 2007년 경상GDP 13조 8,076억 달러(우리나라 14.2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비율(명목) : 2007년 기준 28.4%(우리나라 90.4%)

□ 지난 10년간의 GDP 및 인구 추이:



< 요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경기부양법 등 재정지출 확대로 FY 2010 재정적자는 GDP의 8%에 이를 전망

◇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을 반영한 FY 2010 예산안은 다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① 경제회복
- ② 의료·교육·에너지 분야 등 미래를 위한 전략투자
- ③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 2010의 재정수입은 FY 2009 대비 8.9% 늘어난 2조 3,810억 달러 전망
- 총 지출 3조 5,520억 달러 규모의 FY 2010 예산안은 에너지 및 과학기술, 교육, 인프라투자 등에 중점지원

◇ 조세정책

-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FY 2010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조세정책 제안

◇ 경제위기 대응정책

- '08.10월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으로 시행된 TARP는 재무부에 부실자산 구매와 보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권한을 부여
  - TARP는 크게 우선주나 워런트 등을 매입하는 자본매입, 대부, 보증활동 등으로 구성
- '09.2월 금융시장 안정 대책(Financial Stability Plan)
  - 금융시장 안정 신탁기구 설치, 민관투자펀드 조성,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촉진 계획,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주택지원 및 담보주택 차압 방지 대책, 중소기업 및 지역대출 확대 대책 제시
- '09.2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총 7,872억 달러 규모의 동 법안은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인프라투자, 취약계층 보호(푸드 스탬프, 실업급여 확대 등) 등에 지원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경제성장) 2009년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는 지속될 전망
  - (민간소비) 실업률 증가, 주가하락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신용경색으로 당분간 위축될 전망
  - (기업투자) 민간소비 둔화 및 유동성 부족으로 부진할 전망
  - (정부지출) 총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ARRA\*)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지출 확대
    - \*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09.2월 제정)
  - (순수출) 수출의 성장기여는 지속될 전망이나,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수출여건은 악화될 가능성 존재
  
-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물가상승률은 하락하는 반면 실업률은 상승할 전망
  -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원유 및 식품·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은 큰폭으로 하락할 전망
  - (실업률)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상당 수준 증가할 전망이며 높은 실업률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기부양) 국내수요 위축 및 해외수요 둔화 전망과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른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
  - 물가하락과 급속한 실물경기 침체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했으나,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08.12.16일, 0~0.25%)에 다다른 등 통화정책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

- '09.2월 총수요 진작을 위해 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 총 7,872억 달러 규모의 동 법안은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인프  
라투자, 취약계층 보호(푸드 스탬프, 실업급여 확대 등) 등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제5장 경제위기 대응정책” 참조

<표 1-1> 주요기관 경제전망 비교(CY 2008~2019)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실질 GDP<sup>1)</sup></b>												
2010 예산안	1.3	-1.2	3.2	4.0	4.6	4.2	2.9	2.6	2.6	2.6	2.6	2.6
CBO(1월) <sup>2)</sup>	1.2	-2.2	1.5	4.2	4.4	4.1	3.5	2.8	2.5	2.3	2.2	2.2
Blue Chip consensus(2월)	1.3	-1.9	2.1	2.9	2.9	2.8	2.7	2.7	2.7	2.7	2.7	2.7
<b>CPI(CPI-U)<sup>1)</sup></b>												
2010 예산안	3.8	-0.6	1.6	1.8	2.0	2.1	2.1	2.1	2.1	2.1	2.1	2.1
CBO(1월) <sup>2)</sup>	4.1	0.1	1.7	1.8	2.0	2.2	2.2	2.2	2.2	2.2	2.2	2.2
Blue Chip consensus(2월)	3.8	-0.8	1.8	2.4	2.5	2.4	2.5	2.4	2.3	2.3	2.3	2.3
<b>실업률<sup>3)</sup></b>												
2010 예산안	5.8	8.1	7.9	7.1	6.0	5.2	5.0	5.0	5.0	5.0	5.0	5.0
CBO(1월) <sup>2)</sup>	5.7	8.3	9.0	8.0	6.8	5.8	5.1	4.9	4.8	4.8	4.8	4.8
Blue Chip consensus(2월)	5.8	8.3	8.7	5.8	5.5	5.3	5.2	5.1	5.1	5.1	5.1	5.1
<b>금리<sup>3)</sup></b>												
<b>91일 만기 국채 수익률</b>												
2010 예산안	1.4	0.2	1.6	3.4	3.9	4.0	4.0	4.0	4.0	4.0	4.0	4.0
CBO(1월) <sup>2)</sup>	1.4	0.2	0.6	2.1	4.0	4.7	4.7	4.7	4.7	4.7	4.7	4.7
Blue Chip consensus(2월)	1.4	0.3	1.1	4.2	4.3	4.4	4.4	4.4	4.4	4.4	4.4	4.4
<b>10년 만기 국채 수익률</b>												
2010 예산안	3.7	2.8	4.0	4.8	5.1	5.2	5.2	5.2	5.2	5.2	5.2	5.2
CBO(1월) <sup>2)</sup>	3.7	3.0	3.2	3.6	4.7	5.4	5.4	5.4	5.4	5.4	5.4	5.4
Blue Chip consensus(2월)	3.7	2.8	3.6	5.1	5.2	5.3	5.2	5.2	5.2	5.2	5.2	5.2

주: 1) 전년 대비 % 변화율

2) CBO 경제전망은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음

3) 연평균, %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2009.2

##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FY 2009('09.9월까지)의 재정수입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13.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점진적 회복 전망
  - FY 2010의 재정수입은 FY 2009 대비 8.9% 늘어난 2조 3,810억 달러 전망
  - 이후 고소득층(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만료 예정인 부시 행정부의 감세법을 예정대로 종료하여 세수 증대
    - \* 상기 재원 중 일부(3,178억 달러)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준비하는 준비금의 일부로 충당
- (재정지출)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등으로 재정지출은 확대될 전망
  - FY 2008년 대비 FY 2009년 재정지출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Y 2010 재정지출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9.8% 감소한 3조 5,520억 달러
  - 향후 10년간 실효성 없는 사업 중단 및 사업운영 개선으로 예산절감 달성계획을 제시

<표 1-2> 사업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2010~2019)

(단위: 10억 달러)

구분	예산절감액
사회보장부(SSA)	279
보건복지부(HHS)	27
국세청(IRS)	166
고용보험 프로그램(UI)	12
합계	485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2009.2

- (재정적자) 부시 행정부로부터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물려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FY 2013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
  - FY 2009의 재정적자는 경기부양책(ARRA) 이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1조 7,5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FY 2010 예산안에서는 FY 2013까지 재정적자를 5,330억 달러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시

① 이라크 주둔 군대 철군에 따른 전비 삭감

② 세무상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지, 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10년 종료되는 2001~03년 감세법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방안 등

→ 향후 10년 동안 약 1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③ 정부지출 효율화

-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에 의한 직접대출만을 시행하는 안을 제시하여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향후 10년간 475억 달러)

- 재정사업운영 개선(향후 10년간 485억 달러)

→ 상기 두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1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 감소 효과 전망

<표 1-3> 재정전망

(단위: 10억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2,186	2,381	2,713	3,081	3,323	3,500	3,675	3,856	4,042	4,234	4,446
지출	3,938	3,552	3,625	3,662	3,856	4,069	4,258	4,493	4,678	4,868	5,158
재정적자	1,752	1,171	912	581	533	570	583	637	636	634	712
GDP	14,240	14,729	15,500	16,470	17,498	18,386	19,205	20,060	20,952	21,884	22,858
수입(GDP 대비)	15.4	16.2	17.5	18.7	19.0	19.0	19.1	19.2	19.3	19.3	19.5
지출(GDP 대비)	27.7	24.1	23.4	22.2	22.0	22.1	22.2	22.4	22.3	22.2	22.6
재정적자(GDP 대비)	12.3	8.0	5.9	3.5	3.0	3.1	3.0	3.2	3.0	2.9	3.1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2009.2

## 참고 1

## CBO 경제 및 재정전망

▣ '09.1월 CBO는 2009~2019년까지의 경제 및 재정전망을 발표

- (경제전망) 급격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09년 하반기 이후 차츰 회복되어 '10년 완만한 성장세 시현 전망
  - '09년 주택시장 조정 및 금융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 증가, 자산손실, 신용경색 등이 민간소비를 지속적으로 제약할 것으로 전망('09년 -1.2% → '10년 1.6%)

### 경제전망(CY 2009~2019)

(단위: %)

	2008	2009	2010	2011-2014 평균	2015-2019 평균
실질 GDP <sup>1)</sup>	1.2	-2.2	1.5	4.0	2.4
소비자물가지수(CPI-U) <sup>1)</sup>	4.1	0.1	1.7	2.1	2.2
실업률 <sup>2)</sup>	5.7	8.3	9.0	6.4	4.8

주: 1) year to year(percent change)

2) calendar year avg.(percent)

- (재정전망) 경기침체와 주택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정책대응은 연방정부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

- FY 2009년 적자는 1조 2천억 달러\*로 GDP의 8.3%에 해당  
(1945년 이후 최대 수준)

\* FY 2009년의 재정상황 악화는 지출증가(경기대응 정책, 경기침체기 실업급여 지급 등)와 세입감소(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감소)에 기인

- FY 2010년에는 Fannie Mae, Freddie Mac, TARP 관련 비용이 감소되면서 재정적자 대폭 감소
- 이후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한시법이 2010년 만료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적자 감소

### 재정전망(FY 2009~2019)

(단위: GDP 대비 %)

	2008 <sup>1)</sup>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수입	17.7	16.5	17.5	18.7	19.5	19.7	19.7	19.9	19.9	20.1	20.1	20.2
재정지출	20.9	24.9	22.4	22.0	21.1	21.2	21.1	21.1	21.3	21.2	21.0	21.3
재정수지	-3.2	-8.3	-4.9	-3.3	-1.6	-1.5	-1.4	-1.2	-1.4	-1.1	-0.9	-1.1

주: 1) 확정치

## 참고 2

## 미국의 과거 재정운용 동향

■ (경제동향) 주택시장 침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는 6년간 지속된 경제호황을 마치고, 경기침체 심화

- '07년 3분기까지 미국경제는 24분기 연속('01년 4분기부터 6년간, 연평균 2.8%) 실질 GDP 성장을 기록
  - '00년 IT버블 붕괴, '01년 9·11테러, 원유가격 상승과 같은 일련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였으나,
- '06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와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불거진 금융위기로 현재 경기침체 심화

■ (재정정책)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01~'09) 동안 경제성장 증진 목표를 뒷받침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증가, 임금상승에 대한 감세정책의 효과를 강조, 일몰규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감면법의 제정과 지속적인 감세정책 추구
-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부실자산 매입 및 보증,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
  - 재정적자와 부채에 대한 중기재정목표를 강화할 필요

## 2.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 가.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을 반영한 FY2010 예산안은 다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① 경제회복
  - ② 미래를 위한 전략투자
  - ③ 중기재정건전성 확보

- ① (경제회복) 美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 총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식
- (금융시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5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2009 회계연도에 잠정 배정(FY 2009: ~'09.9월)
    - 이번 예산에 반영된 2,500억 달러의 긴급준비금은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과는 별도의 계획
  - (주택시장) 경기부양법(ARRA)과 별도로 주/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기금에서 향후 6년간 10억 달러 배정
  - (총수요 진작) 경기부양법(ARRA)을 반영하여 중산층 세금감면, 인프라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실업급여 확대 등 계획
- ② (전략투자) 미래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의료보험 개혁, 교육, 에너지 분야에 투자
- (의료보험 개혁)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 '의료보험 준비기금(Health Reform Reserve Fund)' 도입
  - (교육) 2010년에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인 PELL GRANT 장

학금의 최대 수혜액을 5,550 달러로 상향조정

\* 그 외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에 의한 직접대출제도만을 시행하는 안(참고 참조)을 제시

- (에너지) 해외 석유 의존을 경감하기 위한 청정·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및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시스템 도입

<참고>

\* 현재 미국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연방정부에 의한 직접대출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의한 대출로 구분  
FY2010 예산안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부에 의한 직접 대출 제도만을 시행하는 방안임  
이에 따라,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여, 향후 10년간 475억 달러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 ③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경기부양책 등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FY 2013까지 대폭 축소
  - FY2009('09.9월까지)의 재정적자 1조 7,500억 달러(GDP의 12.3%)를 FY2013까지 5,330억 달러(GDP의 3%)까지 축소하는 계획 제시
    - (지출 측면) 이라크 주둔 군대철수, 재정지출 효율화
    - (수입 측면) 세무상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지, 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10.12월 종료되는 부시행정부의 감세법 만료 등

## 나. 그 밖의 주요내용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FY 2010 예산안에서는 중산층에 대해 '10.12월 기한 만료되는 감세법을 연장 적용하는 계획 마련
  -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율 10%, 15%, 25%, 28% 구간, 자녀세액공제, 매리지 페널티(marriage penalty) 구제 등 연장 적용
  - 경기부양법(ARRA)에서 제시된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연장(개인: 400 달러, 부부: 800 달러)
  
- (국방예산 개선) 해외 군사작전 비용을 설정하여 국방부 본예산과 함께 제시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비용을 해외 임시 군사작전 비용으로 신규 설정하여 국방부 예산에 명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제고
  - FY 2010 이후에는 예산의 현실성 확보를 위해 개략적 금액으로 매년 500억 달러 배정
  
- (예산의 투명성 제고) 전 행정부의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항목을 부활
  - 경제 및 재정전망 등 전망 시계를 5년에서 10년으로 회복
  - 자연재해 구호 비용 및 해외 군사비용 등을 명시하고, FY 2019까지 동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재정규모 파악 가능

### 3. 세입 및 분야별 예산

#### 가. 세입

- FY 2009('09.9월까지) 재정수입은 경기침체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
  - FY 2009 재정수입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대폭적인 감소 영향으로 총 재정수입은 FY 2008 대비 13.4% 하락한 2조 1,86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개인소득세) FY 2008 대비 16.4% 하락한 9,580억 달러 전망
    - (법인세) FY 2008 대비 45.7% 하락한 1,650억 달러 전망
  
- FY 2010('09.10월~'10.9월)의 재정수입은 FY 2009 대비 8.9% 늘어난 2조 3,810억 달러 전망
  - FY 2009 큰 폭 하락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FY 2010에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10.8%, 34.5% 증가
  
- FY 2011 이후 세입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법 기한 만료 및 신규제도 도입으로 지속적인 증가 전망
  - 고소득층(연 2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감세법 기한 만료('10.12월) 및 2012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세입 발생

<표 1-4>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Individual income taxes	1,146	958	1,061	1,243	1,393	1,516	1,625	1,719	1,817	1,923	2,033	2,152
Corporation income taxes	304	165	222	302	369	414	423	455	474	494	518	544
Social insurance and retirement receipts:												
Social Security payroll taxes	658	654	682	719	756	804	843	879	926	963	1,005	1,049
Medicare payroll taxes	194	191	196	210	222	235	247	258	272	283	295	308
Unemployment insurance	40	44	53	58	65	67	66	60	57	62	57	62
Other retirement	9	9	9	8	9	9	9	9	9	9	9	9
Excise taxes	67	71	77	75	78	79	80	81	82	83	83	84
Estate and gift taxes	29	26	20	23	25	27	27	29	31	33	36	38
Customs duties	28	24	23	28	33	37	40	43	46	47	49	50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34	28	22	29	36	39	42	43	45	47	48	50
Climate revenues	-	-	-	-	79	79	80	80	81	82	82	83
Other miscellaneous receipts	17	16	16	16	17	17	18	17	17	17	17	18
<b>Total receipts</b>	<b>2,524</b>	<b>2,186</b>	<b>2,381</b>	<b>2,713</b>	<b>3,081</b>	<b>3,323</b>	<b>3,500</b>	<b>3,675</b>	<b>3,856</b>	<b>4,042</b>	<b>4,234</b>	<b>4,446</b>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2009.2

## 나. 분야별 예산

□ (보건·의료)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준비를 위해 ‘의료보험 개혁 준비기금(Health Reform Reserve Fund)’ 도입

- 의료보험 개혁 준비금으로 향후 10년간 6,338억 달러 마련 계획을 제시
  -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한시법 기한 만료로 3,178억 달러, 메디케어에 경쟁입찰 도입 등 현 의료보험제도의 효율화로 3,160억 달러 마련

<표 1-5> 의료보험 개혁 준비기금 계획

(단위: 10억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10~'14	'10~'19
연방 보건·의료 비용 절감	-1.8	-5.1	-18.0	-24.5	-34.3	-83.7	-316.0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한시법 기한만료	-	-11.1	-30.8	-33.5	-35.5	-110.8	-317.8
합계	-1.8	-16.2	-48.8	-58.0	-69.8	-194.6	-633.8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2009.2

□ (에너지 및 과학기술) 해외 원유의존을 감소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성장동력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 경기부양법(ARRA)의 에너지 관련 기금조성에 387억 달러,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0억 달러 배정
- 2012년부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시스템을 도입
-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첨단기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에 투자
  -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의 과학국, NASA 등의 예산을 증액 배정
  - 기후변화, 인간 및 로봇에 의한 우주탐사, 비행 안전을 위한 항공학 연구, 항공교통관제, 소음 및 탄소배출 저감, 연료 효율화 등의 분야에 지원

- (교육)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경기회복을 위해 교육투자 확대
  - 교육부(ED)의 재량지출 예산권한을 467억 달러 배정(법정지출로 이전된 Pell Grant\* 장학금 재원을 제외한 수치)
    - \*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
  -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을 FY 2009 수준보다 200 달러 인상한 5,550 달러로 제안하고 이후 연간 인상분은 CPI+1%로 연동 조정
    - 이번 예산안에서는 Pell Grant 장학금을 재량지출에서 법정지출로 이전하고 향후 10년 동안 1,168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동 장학금 인상분에 지출할 계획
  - 학자금 대출제도를 현재의 연방정부 직접대출과 정부보조금을 받는 은행대출의 두 가지 방식에서 정부의 직접대출제도로 일원화
    -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은행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여 향후 10년 동안 475억 달러의 예산절감을 기대
  
- (인프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
  - 인프라스트럭처 은행 설립(FY 2010에 50억 달러 배정, FY 2010~2014 기간 동안 250억 달러 지원 계획)
    - 인프라투자에 대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설립
    - 정부 직접지출 및 주/지방/개인 상호간 협력 증진의 업무 수행 계획
  - 수도시설 투자 등에 39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고속철도 건설에 10억 달러(주정부 보조금) 지원
  - 낙후지역 광대역 보급을 위해 대출과 보조금의 형태로 농림부 예산에 13억 달러 배정
  
- (국방) 국방부 예산에 해외 군사작전 비용을 함께 제시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
  - 단일 부처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인 국방부 예산은 FY 2010에 6,637억 달러 요청
    - (본예산) FY 2010에는 전년도보다 4% 증가한 5,337억 달러 요청

- (해외 전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비용으로 FY 2009의 남은 기간 동안 755억 달러, FY 2010에 1,300억 달러를 요청한 상태
- 향후 FY 2011~2019에는 해외 군사비용을 개략적 금액으로 매년 500억 달러씩 포함함으로써 미래 재정규모에 현실성을 부여
-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8개월에 걸쳐 이라크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인 한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증강할 방침

<표 1 -6>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량지출 프로그램:												
국방부(해외 군사작전 비용 포함)	593	666	673	614	604	609	618	631	644	659	674	689
기타 재량지출 프로그램	528	613	695	672	653	661	668	682	697	711	727	745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120	1,279	1,368	1,286	1,257	1,269	1,286	1,313	1,341	1,370	1,401	1,434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612	662	695	719	747	787	835	887	944	1,006	1,070	1,139
메디케어	386	425	453	498	500	555	603	650	723	756	781	872
메디케이드	201	259	290	274	280	299	322	347	374	403	435	468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	247	-	-	-	-	-	-	-	-	-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잠재비용	-	250	-	-	-	-	-	-	-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411	673	571	549	482	491	527	527	545	552	562	594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1,610	2,516	2,009	2,040	2,009	2,132	2,287	2,412	2,587	2,717	2,848	3,073
순이자(Net interest)	253	139	164	283	378	434	474	509	539	564	590	622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sup>1)</sup>	-	4	11	16	18	20	23	25	26	27	29	30
총합	2,983	3,938	3,552	3,623	3,662	3,856	4,069	4,258	4,493	4,678	4,868	5,158

주: 1)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에 대한 통계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 이와 같은 지원은 재량지출이나 법정지출, 세금감면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편의상 지출에 포함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2009.2

<표 1-7>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단위: 10억 달러)

	2009	2009~10	2010	Outyears			
	Estimate	Recovery Act	Request	2011	2012	2013	2014
<b>기관별 재량지출:</b>							
<b>Departments:</b>							
Agriculture	23.9	6.9	26.0	27.2	27.9	28.4	29.1
Commerce	9.3	7.9	13.8	8.1	7.9	8.5	8.7
Defense(해외 군사 작전 비용 제외)	513.3	7.4	533.7	541.8	550.7	561.1	574.5
Education	41.4	81.1	46.7	53.6	58.5	61.6	64.5
Energy	26.4	38.7	26.3	26.3	27.2	27.7	28.3
Health and Human Services	80.1	22.4	78.7	83.7	85.5	87.5	90.7
Homeland Security	42.2	2.8	42.7	42.4	41.9	41.4	40.9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0.1	13.6	47.5	47.6	47.5	47.6	48.2
Interior	11.3	3.0	12.0	12.3	12.5	12.7	13.0
Justice	25.5	4.0	23.9	27.7	27.9	28.0	28.2
Labor	12.7	4.8	13.3	13.4	13.5	13.6	13.7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36.7	0.6	51.7	56.0	60.3	64.8	69.3
Transportation	70.5	48.1	72.5	64.2	64.1	65.2	66.3
Treasury	12.7	0.3	13.3	13.7	14.1	14.7	15.3
Veterans Affairs	47.6	1.4	52.5	53.7	55.1	56.6	58.2
<b>Major Agencies:</b>							
Corps of Engineers	5.3	4.6	5.1	5.2	5.2	5.3	5.5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7.8	7.2	10.5	10.6	10.7	10.8	10.9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7	5.9	0.6	0.7	0.6	0.6	0.6
NASA	17.8	1.0	18.7	18.6	18.6	18.6	18.9
National Science Foundation	6.9	3.0	7.0	7.2	8.5	9.1	9.7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7	0.7	0.7	0.8	0.8	0.8	1.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8	1.1	9.7	10.5	11.0	11.6	12.2
Corp.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0.9	0.2	1.1	1.3	1.7	2.0	2.4
National Infrastructure Bank	-	-	5.0	5.0	5.0	5.0	5.0
Climate Policy (Clean Energy Technologies)	-	-	-	-	15.0	15.0	15.0
Other Agencies	19.1	0.2	19.8	18.8	18.6	18.4	18.4
<b>기관별 재량지출 합계</b>	<b>1,061.6</b>	<b>267.0</b>	<b>1,132.8</b>	<b>1,150.3</b>	<b>1,190.3</b>	<b>1,216.7</b>	<b>1,248.2</b>

<표 1-7>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계속)

(단위: 10억 달러)

	2009	2009~10	2010	Outyears			
	Estimate	Recovery Act	Request	2011	2012	2013	2014
<b>기타 재량지출:</b>							
해외 군사작전 비용 : 국방부(확정)	65.9	-	-	-	-	-	-
해외 군사작전 비용 : 국방부(요청)	75.5	-	130.0	50.0	50.0	50.0	50.0
Int'l Supplemental Funding(확정)	4.1	-	-	-	-	-	-
Int'l Supplemental Funding(요청)	7.1	-	-	-	-	-	-
One-time Costs:							
Energy	7.5	-	-	-	-	-	-
Corps of Engineers	5.8	-	-	-	-	-	-
Veterans Affairs and Other	0.2	-	-	-	-	-	-
<b>기타 재량지출 합계</b>	<b>166.2</b>	<b>-</b>	<b>130.0</b>	<b>50.0</b>	<b>50.0</b>	<b>50.0</b>	<b>50.0</b>
<b>재량지출 총합</b>	<b>1,227.7</b>	<b>267.0</b>	<b>1,262.8</b>	<b>1,200.3</b>	<b>1,240.3</b>	<b>1,266.7</b>	<b>1,298.2</b>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0, OMB, 2009.2

#### 4. 조세정책

#####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 연장

- '10.12월 만료되는 2001~03년 감세법을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중산층 가정에 대해 연장 적용하는 계획을 제안

\*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종료

-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율 10%, 15%, 25%, 28% 구간, 자녀세액공제, 매리지 페널티(marriage penalty) 구제 등 연장 적용

- 유산세(estate tax)를 2009년 수준으로 동결
  - '01년 감세법으로 유산세는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이 점차 감소되어 '10년 폐지되나, 일몰규정 만료('10.12월) 후 '11년 고율로 전환
    - 이번 예산안에서는 유산세를 '09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

<표 1-8>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면세한도	1	1	1.5	1.5	2	2	2	3.5	1 <sup>1)</sup>	1
최고세율	50	49	48	47	46	45	45	45	0	55

주: 1) 유산세 폐지

- 경기부양법(ARRA)에서 제시된 조세조항 연장
  -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연장(개인: 400 달러, 부부: 800 달러)
    - 동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시행으로 얻어지는 경매 수입으로 상쇄할 계획
  - EITC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아동부양가구의 빈곤문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를 연장하고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의 영구화 추진

## 5. 경제위기 대응정책

- 美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 조치를 시행
  - 부실자산 매입 및 보증, 예금보험 상향조정,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관련 부처와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더불어
  - '09.2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감세 및 인프라투자, 미래성장동력,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ARRA) 마련
  - 주택 및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당국의 노력은 향후 미국 경제회복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가. 2008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 '08.2월, 2008년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tax rebate)
  - 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 확대(세금공제)
  - 연방주택청(FHA)의 주택모기지보험 프로그램(single-family Program)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 '08.7월, 주택 및 경제 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 Fannie Mae와 Freddie Mac에서 발행한 모기지증권 및 전환우선주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 연체중인 모기지에 대하여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증해 주는 모기지로 재융자 가능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주택관련 조세조항 마련
  
- '08.10월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구제금융법으로 알려진 동법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규정

-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으로 시행된 TARP는 재무부에 부실자산 구매와 보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권한을 부여
  - 2,500억 달러 즉시 사용, 필요시 1,000억 달러 추가 투입
  - 잔여 3,500억 달러는 의회 승인 후 사용('09.1월 상원 통과)
- TARP는 크게 우선주나 워런트 등을 매입하는 자본매입, 대부, 보증활동으로 구분 가능

<표 I -9> TARP 지원 현황('09.3.13일 현재)

(단위 : 10억 달러)

프로그램	지원성격	지원액
Capital Purchase Program 510개 금융기관 <sup>1)</sup>	자본매입	198.5
Systemically Significant Failing Institutions AIG	자본매입	40 40
Automotive Industry Financing Program	자본매입/대부	24.8
GMAC LLC	자본매입	5
GM(지택의 유상증자 참여 목적)	대부	0.9 <sup>2)</sup>
GM	대부	13.4
Chrysler Holding LLC	대부	4
Chrysler Financial Services Americas LLC	대부	1.5
Targeted Investment Program	자본매입	40
씨티그룹		20
뱅크오브아메리카(BOA)		20
Asset Guarantee Program <sup>3)</sup>	보증	5 <sup>4)</sup>
씨티그룹		5
Consumer and Business Lending Initiative Investment Program	대부	20
TALF LLC <sup>5)</sup>		20
합계		328.3

주: 1) 주요 기관 :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웰스 파코에 각각 250억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150억 달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에 각각 100억 달러 지원

2) 최대 10억 달러까지 지원

3) 재무부, 연준(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씨티그룹이 소유한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 3,060억 달러까지 지급보증하는 것에 합의. 이에 따라 씨티그룹은 지급보증되는 부실 자산에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1차로 290억 달러를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10% 부담(미 정부 90% 부담). 290억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TARP에서 최대 50억 달러를 맡게 되고, 이후 FDIC가 100억 달러, 양 기관의 손실부담금 소진시 FRB가 비상환 청구 방식으로 잔여 자금을 제공(2,340억 달러까지)

4) 보증규모

5) TALF LLC: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

## 나. 2009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 □ '09.2월 금융시장 안정 대책(Financial Stability Plan)

#### ○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6개 범주\*로 구성된 종합대책

- \* ① 금융시장 안정 신탁기구 설치, ② 민관투자펀드 조성,
- ③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촉진, ④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⑤ 주택지원 및 담보주택 차압 방지 대책, ⑥ 중소기업 및 지역 대출 확대

#### ① 금융시장 안정 신탁기구(Financial Stability Trust) 설치

- 자산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에 대해 포괄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자본지원 프로그램(Capital Assistance Program-CAP)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은행은 6개월 이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CAP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 받음
  -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우선주 취득
  - 정부는 우선주를 '09.2.9일 주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며 9%의 배당금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CAP 시행
- 은행의 재무제표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강화 추진

#### ② 민관투자펀드 조성(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5,000억 달러~1조 달러

- 정부와 민간의 합동자본으로 초기에 5,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1조 달러까지 확대
- 민간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 허용

#### ③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촉진: 최대 1조 달러

- 연준(FRB)의 기간물자산담보대출창구(TALF)의 범위와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대
  - 오토론, 중소기업 대출,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소비자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 납세자의 채원 보호를 위해 AAA 등급 대출에 한정

- TALF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업용모기지증권(CMBS)을 포함
- \* 향후 민간기관(non-Agency)이 발행한 주택모기지담보증권(RMBS), 기업채무담보증권 등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연준(FRB)과 협의하여 결정

<참고> 기간물자산담보대출창구(TALF)

- \*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뉴욕연방준비은행은 AAA 등급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소유자에게 대출 지원
- \*\*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은 동 대출에 대해 200억 달러 지원

④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은 자금의 용도,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부는 이를 웹사이트(FinancialStability.gov)에 공개
-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모기지 담보 차압 완화를 위한 정부방침에 협조
- 정부지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분기별 1센트 배당, 주식환매 및 회사인수 제한, 경영자 연봉을 50만 달러로 제한

⑤ 주택지원 및 담보주택 차압 방지 대책

- 연준의 주택관련 GSEs(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의 부채 및 주택담보부증권(MBS) 매입(6천억 달러)으로 모기지 금리 인하 유도
-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 500억 달러 지원
  - 실거주 주택소유자에 대해 대출의 건전성 및 장기간 상환 실적을 감안하여 월별 상환금 감액 지원
- 연방주택청(FHA)의 보증을 통한 모기지 채용자 프로그램 등 FHA의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

⑥ 중소기업 및 지역 대출 확대

-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촉진 계획'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AAA 등급의 SBA론\*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 SBA론의 보증한도를 75%에서 90%로 상향조정
  - \* SBA론(SBA Loan): 중소기업청(SBA)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에서 보증을 하고 민간 금융기관(은행, 신용조합 등)에서 대출

□ '09.2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총 7,872억 달러 규모의 동 법안은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인프라 투자, 취약계층 보호(푸드 스탬프, 실업급여 확대 등) 등에 지원\*
- 재정지출 4,990억 달러, 세액공제 2,880억 달러로 구성
  - \* 경기부양법의 주요 지원분야: ① 청정·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 ② 과학기술 지원
  - ③ 도로·교량·대중교통·수로시설 개선
  - ④ 교육분야 지원
  - ⑤ 세액공제
  - ⑥ 보건·의료비용의 합리화
  - ⑦ 취약계층 지원
  - ⑧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 및 기초 공공서비스 지원

<표 1-10> 경기부양법(ARRA) 주요 내용

(단위: 10억 달러)

분야	세부분야	내용	금액
인프라 투자	사회기반시설 개선	▪ 광대역(broadband) 보급	7.2
		▪ 재향군인 병원 건설 및 의료시설 개선 등 ▪ 국방부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1.2 4.2
	교통	▪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27.5
		▪ 대중교통 시설 건설, 보수·개선, 버스와 같은 시설의 구매지원 등 ▪ 고속철도 등	8.4 8
환경정화/수자원 관리	▪ 깨끗한 물, 치수, 前 무기생산지 및 에너지 연구 현장의 환경정화	18.8	
교육	교육	▪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 인상 ▪ 특수교육	15.6 12.2
	직업훈련	▪ 직업훈련	3.95
과학기술		▪ NASA-기후변화 연구인력 투입, 심화 탐사 활동 등	1
		▪ 국립과학재단(NSF)-기초과학 및 공학분야 고용기회 확대, 연구시설 구축·개선, 과학·수학·공학분야 교육 향상 등	3
		▪ 에너지부(DOE)-물리학 기초연구(고에너지 물리학, 핵물리학, 핵융합에너지), 연구실 및 실험시설 개선 등	2
보건·의료		▪ 네트워크화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19
		▪ 생의학 분야 연구(암, 알츠하이머, 심장병, 줄기세포) 지원	10
에너지		▪ 연방건물 보수(그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증진 목적)	4.5
		▪ 화석 에너지 연구·개발	3.4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관련 활동	11
		▪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연구	2.5
취약계층지원		▪ 푸드 스탬프	19.9
		▪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	2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 및 기초 공공서비스 지원		▪ 주/지방 법집행 지원	4
		▪ 소방서 신축, 개조, 개선	0.21
		▪ 화물철도, 철도(Amtrak), 페리 등 주요 운송시설 보호	0.15
		▪ 주요 항만 시설 보호	0.15
세액공제		▪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116.2
		▪ AMT	69.8
		▪ 법인세 감면	6.2